

강하자 지침서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제정	1996년 09월 08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개정	1997년 01월 12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1998년 01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3년 02월 27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5년 01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0년 09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1년 03월 04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2년 04월 15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2년 10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2년 12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2년 12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4년 08월 0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6년 04월 2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경고문!

스카이다이빙은 후유증을 유발하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항공스포츠 활동으로써, 이 활동을 하는 강하자는 본 지침서의 모든 조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나 그 산하 교육기관 및 강하주관자들은 강하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안전보증을 제공할 수 없으며, 모든 안전문제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동참하는 강하자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달려있다.

1. 목적

본 강하자 지침서는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회원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국내 스카이다이빙에 관한 규율을 확립 주지시키며, 그를 통해 스카이다이빙활동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대한민국 내에서 군 전술 목적의 낙하산 활동을 제외한 항공 스포츠로써의 모든 스카이다이빙 활동을 하는 강하자에게 적용되며, 국내에서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나 산하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칭한다) 및 강하주관자의 주도하에 활동하는 외국 국적의 강하자에게도 적용된다.

3. 제정근거

협회는, 세계항공연맹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e, FAI)의 국제낙하산분과위원회(International Parachute Commission)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훈련안전위원회가 본 강하자 지침서에 한국 실정에 적합한 강하활동 안전 규정과 자격증 발급 규정을 제정하며 실행하도록 한다.

4. 작성 및 수정

강하자 지침서는 협회의 훈련안전위원회에서 작성 및 수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5. 수정 시기 및 방법

강하자 지침서는 매년 1회 이상 훈련안전국이나 학교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4항에 의거 수정 보완하며, 수정 내용이 없을 때는 최근 년도의 판본이 당해 연도에 지속적으로 적용 된다.

6. 공고 및 시행

수정되는 강하자 지침서는 대한민국항공회에 보고되어 스카이다이빙규정의 기본이 되며, 30일 이내에 협회 회원들에게 고지한다.

7. 안전 규정

7.1 강하자는 항상 안전한 강하가 되도록 연습하여야 하며, 안전한 강하를 하지 않는 강하자는 강하주관자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며, 경기 중에 안전한 강하를 하지 않는 선수나 팀은 경기에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7.2 모든 강하자는 강하 전 다음 사전준비를 갖는다.

7.2.1 모든 강하자는 협회의 유효한 회원 자격을 가져야 한다.

7.2.2 모든 강하자는 강하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운동을 한다.

7.2.3 모든 강하자는 사전준비운동 후에 기능고장 시 응급조치요령을 당일 첫 강하 전 최소 3회 이상 반복 연습한다.

7.2.4 모든 강하자는 강하주관자의 강하 안전 브리핑을 듣고 강하한다.

7.2.5 강하장비 점검은 최소 3회 이상 하며, 교육생의 장비는 교관이 한다. 각 개인의 장비는 장비 착용 전, 항공기 탑승 전과 항공기에서 이탈 전에 아래의 사항을 본인이나 강하자 서로 간에 한다.

7.2.5.1 점검사항

- ① 헬멧의 턱 끈 길이와 잠금장치 확인
- ② 방풍안경 또는 안경의 안전도와 투명성 점검
- ③ 낙하산 연결 및 분리장치의 연결 상태 확인
- ④ RSL의 연결 상태가 낙하산 제조회사의 지시대로 정확하게 되었는지
- ⑤ 고도계의 바늘과 흔들림의 상태 (디지털 고도계는 제작사의 매뉴얼 참조)

7.2.5.2 주 낙하산

- ① 강하자에게 적당한 크기인지 여부 확인
- ② 낙하산 포장 시 포장마감 줄(closing loop)의 상태와 포장용 당김 줄은 제거 되었는지 확인

7.2.5.3 개방 장치

- ① 개방 손잡이의 주머니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
- ② 던짐 방식 보조 낙하산의 손잡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확인
- ③ 스프링 방식 보조낙하산은 전개상 위. 컨테이너 중앙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얹혀 있는지 확인

7.2.5.4 하네스

- ① 가슴 띠, 다리띠가 꼬여 있는지 확인
- ② 하네스 조절용 금속장식의 조임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

7.2.5.5 재봉질 상태: 실밥의 풀림 상태 확인

7.2.5.6 강하조장은 군 또는 국내외 스카이다이빙 교육기관에서 강하조장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원이어야만 되나 부재시 교관자격 소지인원 또는 숙달인원이 조장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7.2.7 교육생 및 초심자는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7.2.8 D등급의 유효회원인 강하자격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스카이다이빙 입문을위한 교육강하 및 초심자를위한 강하를 제외하고 협회로 부터 승인받은 일체의 강하활동을 주관할 수 있다.

7.2.9 협회 사무국은 필요시 강하주관자에게 강하결과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3 강하자의 낙하산이 완전히 퍼진 후의 최저고도는 다음과 같으며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강하조장이나 훈련안전위원의 권고로 안전고도를 상향 조절할 수 있다.

7.3.1 2인승 강하(Tandem Jump) ; 4,500피트 이상 상공

7.3.2 속성고공강하교육(AFF Jump) ; 4,000 피트 이상 상공

7.3.3 A 등급 자격자 ; 3,000 피트 이상 상공

7.3.4 B,C,D 등급 강하자격자 ; 2,500 피트 이상 상공

7.4 풍속이 다음과 같을 때에는 낙하산 강하를 하지 말아야 한다.

7.4.1 사각낙하산을 사용하는 교육생: 시속 14마일(약 22km/h) 이상.

7.4.2 사각낙하산을 사용하는 자격증소지자: 제한 없음

7.4.3 공중풍향과 공중풍속은 강하주관자의 판단 하에 강하자 에게 무리가 될 정도이면 당해 강하를 취소할 수 있다.

7.5 아래의 사람은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없다.

7.5.1 24시간 내에 SCUBA 다이빙을 한 자

7.5.2 음주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자

7.6 일정기간 동안 강하를 지속하지 아니한 강하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 강하를 하여야 한다.

7.6.1 교육생

학교 교육생 교육규정에 따른다.

7.6.2 초심자

학교 교육규정에 따른다.

7.6.3 A 등급 소지자

7.6.3.1. 90일 이상 강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교관으로부터 지상교육을 받은 후 교관의 판단 하에 결정된 강하방식에 따라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7.6.4 B 등급 소지자

7.6.4.1 180일 이상 강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교관으로부터 지상교육을 받은 후 교관의 판단 하에 결정된 강하방식에 따라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7.6.5 C 등급 소지자.

7.6.5.1 1년 이상 강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교관으로부터 지상교육을 받은 후 교관의 판단 하에 결정된 강하방식에 따라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7.6.6 D 등급 소지자.

7.6.6.1 2년 이상 강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교관으로부터 지상교육을 받은 후 교관의 판단 하에 결정된 강하방식에 따라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7.7 교육생 장비

7.7.1 모든 교육생의 낙하산 장비는 Piggyback 형태의 하네스, 컨테이너와 한 번에 분리되는 (Single-Point) 라이저 방식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7.7.2 교육생은 딱딱한 헬멧을 착용하고 강하해야 한다.

7.7.3 교육생의 낙하산에는 RSL 장치가 있어야 한다.

7.7.4 교육생의 낙하산에는 AAD 장치가 있어야 한다.

7.7.5 교육생은 투명한 방풍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7.7.6 교육생은 육안으로 고도를 확인 할 수 있는 고도계를 착용해야 한다.

7.7.7 교육생의 낙하산과 장비는 TSO-C23 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에 의해서 감항 인증된 낙하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7.8 낙하산 장비

7.8.1 모든 강하자의 낙하산과 장비는 TSO-C23 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에 의해서 감항 인증된 낙하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7.8.2 모든 강하자의 강하에 사용되는 낙하산은 스포츠용 낙하산과 군용 낙하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7.8.1의 조항에 해당되는 장

비를 사용해야 한다.

7.8.3 모든 항공기에서 강하를 할 때는 2개 이상의 낙하산을 착용해야 한다.

7.8.4 인증되지 않은 낙하산은 TSO-C23 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에서 의해서 감항 인증을 받지 않은 낙하산을 말하며, 개발 중인 시험용 낙하산의 강하는 다음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

7.8.4.1 모든 인증되지 않은 낙하산의 강하자는 시험용 주낙하산과 예비낙하산 외에, TSO-C23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에서 의해서 감항 인증된 별도의 예비 낙하산을 추가로 착용하여야 한다.

7.8.4.2 시험용 예비낙하산의 포장은 필히 고공 낙하산정비사에 의해서 포장 되어야 하며, 정비사의 포장 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7.8.4.3 시험용 낙하산의 강하자는 필히 D급 자격 이상이어야 한다.

7.8.4.4 시험용 낙하산의 강하자는 생명 보험과 낙하산 시험에 관련된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보험 가입증권을 훈련안전국에 제출해야 한다.

7.8.4.5 상기 조항 외에 기타의 상황을 강하주관자가 평가 및 판단하여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강하를 중지시킬 수 있다.

7.9 낙하산 자동 산개기는 A, B급강하 자격자의 예비낙하산에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C급과 D급강하 자격자에게는 착용을 권장한다.

7.10 강하자는 헬멧, 고도계와 방풍안경을 착용하여야한다. 부득이 헬

멧을 착용하지 못 할 경우는 사전에 강하주관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7.11 예비낙하산 포장은 낙하산 정비사관리규정에 따른다.

7.11.1 외국에서 외국낙하산 정비사에 의해서 포장되어진 예비낙하산은 다음 포장일까지는 재포장 없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7.11.2 외국에서 포장된 예비낙하산은 이전 낙하산정비사가 속한 국가의 재포장주기에 따라 재포장을 실시해야하며 재포장 후에 동일한 낙하산을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회 낙하산정비사에 의해 재포장 되어져야한다.

7.12 해발고도 15,000피트 이상에서 30분간 비행을 해야 할 때에는 항공기 내에 산소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한다.

7.13 강하복장

강하자는 다음의 조항을 숙지하고 강하에 임하여야 한다.

7.13.1 목걸이, 머리핀, 커다란 귀걸이는 강하를 하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강하 전 제거해야 하며, 신발의 끈은 짧게 매고, hook 등의 고리로 된 신발은 다른 신발로 갈아 신거나 테이핑 해야 한다.

7.13.2 강하복의 주머니가 열려있지 않나 확인하고 주머니에 있는 물건은 제거한다.

7.13.3 긴 머리는 머리 끈으로 간결하게 동여맨다.

7.13.4 강하자는 가죽 또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7.14 강하는 아래의 내용으로 진행해야 한다.

- 7.14.1 항공기 비행 전 지상근무자 브리핑
- 7.14.2 항공기 비행 전 조종사 브리핑
- 7.14.3 항공기 비행 전 강하자 브리핑
- 7.14.4 강하자 장비 검사
- 7.14.5 이륙 전 검사
- 7.14.6 스파팅(spottling)
- 7.14.7 강하(jump run)
- 7.14.8 항공기 하강과 착륙
- 7.14.9 디브리핑 (debriefing)

7.15 강하주관자는 강하 실시 전에 아래의 내용을 점검 및 조치해야 한다.

7.15.1 항공기

- 7.15.1.1 항공기 의자 제거
- 7.15.1.2 도어 점검
- 7.15.1.3 날카로운 부분 테이프 처리
- 7.15.1.4 험거운 부분의 안전 확보
- 7.15.1.5 발판과 손잡이의 고정 및 기름 제거
- 7.15.1.6 항공기 고도계 조정 확인
- 7.15.1.7 항공 고시보(NOTAM)에 주의
- 7.15.1.8 항공기 무전기 작동상황
- 7.15.1.9 생명줄 (static line) 고정 확보물 확인
- 7.15.1.10 절단용 칼의 적합한 위치 여부 확인
- 7.15.1.11 유도 스파팅 시 정확한 의사전달과 신호 수단 점검
- 7.15.1.12 풍향 풍속의 정보와 풍속계 이용
- 7.15.1.13 가능할 경우에 좌석 안전벨트 착용
- 7.15.1.14 도어 근처의 승객용 손잡이 제거

7.15.2 기타

- 7.15.2.1 교육생의 강하기록부 점검
- 7.15.2.2 강하 계획 확인

- 7.15.2.3 이탈과 자유강하 지시사항 확인
- 7.15.2.4 비상 상황 시 절차 훈련 또는 재연
- 7.15.2.5 낙하산 조종과 착지 방향 확인
- 7.15.2.6 DZ의 모양과 위험요소 (항공사진 또는 지도 준비)

7.16 항공기 탑승 방법

항공기에 탑승 또는 접근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며 조종사, 항공기 승무원과 지상 근무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른다.

- 7.16.1 고정익항공기(fixed-wing); 항상 항공기의 문과 꼬리 날개 범위 안에서 접근 및 탑승한다.
- 7.16.2 회전익 항공기(helicopter); 항상 항공기의 머리 부분과 문 사이의 범위 안에서 접근 및 탑승한다.
- 7.16.3 항공기에 탑승 후에는 항공기 기체의 계기 또는 부속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 7.16.4 강하조장은 조종사와 간략한 수신호 또는 짧은 명령어를 사용하여 항공기를 유도한다.
- 7.16.5 강하자는 항공기 조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7.17 항공기의 비상시 행동수칙(Aircraft Emergencies)

7.17.1 비상 착륙 시

- 7.17.1.1 헬멧 착용과 좌석안전벨트를 맨다.
- 7.17.1.2 무릎을 가슴에 붙인다.
- 7.17.1.3 손으로 머리와 목 뒤를 감아 보호한다.
- 7.17.1.4 착륙 후 조종사의 탈출 명령 시 즉시 뛰어내린다.
- 7.17.1.5 항공기에서 지상탈출 후에 즉각 1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다.

7.17.2 만일 비행이 문제가 있는 경우 교관 또는 강하조장의 명령과 도움 하에 다음 4가지 방법 중에서 행동한다.

- 7.17.2.1 전원이 항공기와 함께 착륙한다.
- 7.17.2.2 항공기 이탈과 동시에 예비낙하산을 개방한다.

7.17.2.3 항공기 이탈과 동시에 주낙하산을 개방한다.

7.17.2.4 평소 익힌 방법으로 교관 또는 강하조장을 돕거나 이탈한다.

7.17.3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 이탈 후 낙하산을 편 상태에서

7.17.3.1 교관 또는 강하조장의 낙하산을 찾아 따라가며, 넓고 장애물이 없는 장소로 착륙한다.

7.17.3.2 교관 또는 강하조장을 찾지 못했을 경우는 넓고 장애물이 없는 장소를 찾는다.

7.18 대형 만들기 강하 안전수칙 대형 만들기 강하자는 다음의 조항을 기본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수평 대형 만들기 강하와 수직 대형 만들기 강하에 모두 적용된다.

7.18.1 5명 이하의 대형 만들기 강하는 낙하산을 펴는 고도보다 1,500피트 상공에서 해산해야 한다.

7.18.2 6명 이상의 대형 만들기 강하는 낙하산을 펴는 고도보다 2,000피트 상공에서 해산해야 한다.

7.18.3 해산하는 방향은 중앙에서 180도 회전하여 수평으로 전진하여 도피한다.

7.18.4 단체 활동을 한 강하자는 낙하산을 펴기 전에 주변이나 자신의 위위에 다른 강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주위가 안전한 상황일 때에 2회 이상의 낙하산 개방신호를 실시한 후에 낙하산을 개방해야 한다.

7.18.5 아래에 위치한 강하자는 우측으로 통행한다. 이것은 낙하산을 편 후에도 적용된다.

7.19 카메라 촬영 강하

7.19.1 카메라 촬영 강하 전에 강하자의 공중에서의 활동을 숙지해야 한다.

7.19.2 카메라 촬영 장비는 낙하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고

가벼운 것을 권장한다.

7.19.3 카메라 촬영 강하는 C등급 이상의 강하자격자에게 권장하나, 강하주관자의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다.

7.19.4 카메라 촬영 강하자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청음고도계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7.19.5 카메라 촬영 강하자는 비상시 분리 할 수 있는 장치의 헬멧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7.19.6 카메라 촬영 강하자는 매번 다음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7.19.6.1 낙하산의 얽힘 상황

7.19.6.2 호수, 강, 바다, 나무 또는 수목지대, 건물, 고압전선, 도로 등의 위험한 장애물

7.20 특수한 상황에서의 낙하산 강하

7.20.1 야간 강하, 수상 강하, 개발 중인 낙하산 장비의 강하시는 필히 훈련안전국 또는 교육기관 승인 하에서 행할 수 있다.

7.20.2 사전에 계획된 낙하산의 분리 강하는 강하자격증 D급 이상의 자격자이어야 하며 특별 제작된 하네스와 1개의 체스트형으로 된 별도의 예비낙하산을 추가로 착용해야 한다.

7.20.3 2인승 강하 시에는 낙하산 대형 만들기를 할 수 없다.

7.20.4 2인승 강하는 주변이 폐쇄된 원형 경기장에서 시범 강하를 할 수 없다. 부득이 강하해야 할 경우는 협회훈련안전국 또는 교육기관의 훈련안전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강하자격

8.1 강하자의 구분

8.1.1 교육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개인 단독 강하를 할 능력이 없는 자.

8.1.2 초심자: 학교에서 교육을 수료하였으나, A 등급 자격을 취득

하기 전 단계의 강하자.

8.1.3 강하 자격증 소지자: A, B, C 또는 D 등급 강하자격증을 취득한 자.

8.2 스카이다이빙 입문을 위한 교육 강하를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내에서 항공스포츠로서의 강하를 하는 강하자는 협회회원으로 유효 회원이어야하고, 강하자격증을 가져야만 강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교육생 및 초심자는 학교 주관 하에서만 강하를 할 수 있다. 상기 강하자 조건을 위배는 강하자 및 강하주관자는 협회의 징계를 받는다.

단, 2인승 강하 희망자는 협회 유효회원이 아니더라도 강하를 할 수 있다.

8.3 90일 미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강하자는 사무국에 임시입회 신청서 및 책임면제증명서를 작성제출하고, 강하주관자로부터 FAI인증자격증, 강하기록부 검증을 받고 강하 허락을 받은 후에 강하활동에 동참할 수 있으며 본 강하자 지침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9. 강하자격증 관리규정

9.1 강하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

9.2 협회원은 자신이 상위등급 자격의 기준에 도달하면, 교관의 평가 및 확인을 받아 협회 사무국에 상위등급의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한다.

9.3 협회 사무국은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유효회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회장이 발급한다.

9.4 외국에서 취득한 강하자격증의 전환 발급 절차

9.4.1 외국에서 강하자격증을 취득한 회원이 국내의 강하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관으로부터 해당국 자격증과 강하기록부를 확인받은 자격증 전환 발급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협회의 해당 강하자격증으로 전환 발급한다.

9.5 협회 사무국은 서류검토 및 신청자의 자격증 종류와 등급 확정, 자격증취득 적격여부 등을 검토 후 자격증을 발급하고 대한민국 항공회에 발급 내용을 통보한다.

9.6 자격심의

자격심의는 본 회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교관이 실시한다.

9.7 자격증의 종류

자격증은 강하자격증(Licence), 교관 자격증(Rating), 낙하산정비사 자격증(Rigger), 심판자격증으로 분류되며, 교관 자격증은 생명줄강하, 교관도움개방 강하, 2인승 강하와 속성 자유강하 교관으로, 낙하산정비사 자격증은 1,2급 낙하산정비사 자격증으로 세분한다.

9.7.1 강하자격증

9.7.1.1 A 등급 자격증; 초급 강하자격

9.7.1.2 B 등급 자격증; 중급 강하자격

9.7.1.3 C 등급 자격증; 상급 강하자격

9.7.1.4 D 등급 자격증; 고급 강하자격

9.7.2 교관자격증

9.7.2.1 교관 자격증 (Instructor)

9.7.2.2 교관/시험관 자격증 (Instructor / Examiner)

9.7.3 낙하산 정비사 자격증

9.7.3.1 낙하산 2급정비사 자격증

9.7.3.2 낙하산 1급정비사 자격증

9.7.4 심판관 자격증

9.8 강하 자격증 요구조건

9.8.1 A 등급 자격자

A급 자격자는 자신이 강하할 지점을 자신이 선택하여 강하할 수 있는 능력과 주 낙하산을 자신이 포장할 수 있는 능력, 대형 만들기 강하의 기본과 수상강하 기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9.8.1.1 최소 25회 자유강하(Free fall) 기록을 가진 자로써, 40초 이상의 자율통제 된 강하 기록을 3회 이상 갖고, 5분 이상의 누적 자유강하시간 기록을 가진 자.

9.8.1.2 자신이 항공기에서 이탈하는 것과 낙하산을 펴는 지점을 결정하여 최소 5회 이상 착지점 중심 반경 20m 이내 착륙 기록을 가진 자.

9.8.1.3 교관으로부터 빠질 수 있는 물, 고압선 및 산림 지역에서 착지하는 방법을 교육 받은 자.

9.8.1.4 자유강하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좌. 우로 360도 수평회전(turn)을 할 수 있는 자.

9.8.1.5 주낙하산 포장능력을 가진 자.

9.8.1.6 대형 만들기 강하를 하면서, 안정되게 항공기 이탈을 할 수 있으며, 하강 속도와 수평 이동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2인조 대형 만들기 강하를 최소한 3회 이상 연습을 한 기록이 있으며, 낙하산 개방 시 다른 강하 자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위를 확인하고 낙하산을 펴며, 다른 강하 자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9.8.1.7 본인 및 타인의 강하 전 장비점검 능력을 가진 자.

9.8.1.8 교관에 의한 A등급 자격증을 위한 필기시험에서 80%

이상 점수를 획득한 자.

9.8.2 B 등급 자격자

9.8.2.1 A 등급 자격자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9.8.2.2 최소 50회의 자유강하 기록을 가진 자로써, 45초 이상의 자율통제 된 자유강하를 3회 이상 가진 자로써, 총 자유강하시간 기록이 30분 이상인 자.

9.8.2.3 최소 10회 이상 착지점 중심반경 10m 이내 착륙기록을 가진 자.

9.8.2.4 자유강하 시 15초 이내에 좌, 우 360도 수평 회전과 뒤로 제비돌기(loop), 우, 좌 360도 수평회전과 제비돌기를 할 수 있는 능력자.

9.8.2.5 자유강하 시 하강속도 조절 능력을 가진 자.

9.8.2.6 대형 만들기 기초안전사항 및 기본필수사항을 숙지하고, 또한 실기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9.8.3 C 등급 자격자

9.8.3.1 B 등급 자격증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9.8.3.2 최소 200회 자유강하 기록을 가진 자로써, 45초 이상의 자율통제 된 자유강하를 10회 이상 실시 한 기록이 있고, 60분 이상의 누적 자유강하시간 기록을 가진 자.

9.8.3.3 최소 20회 이상 착지점 중심반경 5m 이내 착륙 기록을 가진 자.

9.8.3.4 자유강하 시 15초 이내에 좌, 우 360도 수평회전과 뒤로 제비돌기, 우, 좌 360도 수평회전과 뒤로 제비돌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4인조 이상의 대형 만들기 강하에서 4점 이상을 할 수 있는 자.

9.8.4 D 등급 자격자

9.8.4.1 C 등급 자격증 신청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9.8.4.2 최소 500회 이상 자유강하 기록을 가진 자로써, 60초 이상의 자율통제 된 자유강하를 10회 이상 실시하고, 3시간

이상의 누적 자유강하시간 기록을 가진 자

9.8.4.3 최소 25회 이상 착지점 중심반경 2m 이내 착륙 기록을 가진 자.

9.8.4.4 자유강하 시 18초 이내에 뒤로 제비돌기와 앞으로 제비돌기, 좌, 우 360도 수평회전과 우, 좌로 구르기(roll)를 순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8인조 이상의 대형만 들기 강하에서 2점 이상을 할 수 있는 자.

9.8.4.5 최소 2회 이상의 야간강하 기록을 가진 자로써 그 중 1회 이상은 20초 이상의 자유강하를 한 자 혹은 야간 강하가 불가능할 경우, 시험관이 주관하는 야간강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9.9 상기 B, C, D등급 자격증의 필기시험은 교관의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9.10 교관 자격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

9.10.1 교관의 의무; 교육생을 가르치는 교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교육 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연구하며, 교육 관련의 각종 세미나에 참가하여야 한다.

9.10.2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의 일반사항

9.10.2.1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9.10.2.2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은 협회 유효회원만이 취득할 수 있다.

9.10.2.3 자격갱신 기간이 경과된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는 해당시험관 또는 훈련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9.10.2.4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은 해당 시험관 또는, 훈련안전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시험관이 일정기간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평가 및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회장이 그 직위를 해제 할 수 있다.

9.10.2.5 교관자격증은 일련번호가 없다. 따라서 서명 시에는 자신의 서명과 자격을 취득한 연도 및 월을 표시한다.

9.10.3 교육 방법 ; 교육생의 교육은 아래와 같이 세분되며 교육 방법에 따른 해당교관 자격은 9.7.2의 등급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다.

9.10.3.1 생명줄 강하(Static Line).

9.10.3.2 교관도움개방 강하(Instructor Assisted Deployment)

9.10.3.3 2인승 강하(Tandem Jump).

9.10.3.4 속성자유강하(Accelerated Free Falls).

9.11 시험관 임명자격의 요구조건

협회장이 시험관을 임명할 때는 9.12 교관 자격증관리규정 및 낙하산정비사 관리규정에 의하고, 아래의 요구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험관을 부득이 임명해야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9.11.1 협회 강하지침에 따른 교관을 가르치고 감독하며, 숙달 교육과 강하를 시킬 수 있는 자.

9.11.2 고공강하, 응급처치, 낙하산 포장과 낙하산 또는 강하 장비 수선에 관한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는 자.

9.11.3 협회 강하지침에 따른 야간강하, 수상강하, 시범강하와 기타 강하를 지도할 수 있으며, 야간강하, 수상 강하와 사전 계획된 주 낙하산 분리 강하를 진행한 자.

9.11.4 협회의 모든 등급별 강하자격, 각종 교관 자격의 응시기준과 평가기준을 전부 숙지하고 있으며, 등급별 자격자에게 교육시키는 방법을 전부 숙지하고 있는 자.

9.11.5 개정되는 등급별 자격 요구조건을 숙지하고 있는 자.

9.11.6 시험관의 모든 사고에 대한 연구가 협회의 의견과 동일한

자.

- 9.11.7 기본 안전 수칙
- 9.11.8 스카이다이빙 일반
- 9.11.9 대한민국 항공법규
- 9.11.10 스카이다이빙 역사
- 9.11.11 응급처치
- 9.11.12 협회 정관 및 관련규정
- 9.11.13 낙하산 정비와 구조학
- 9.11.14 교육방법

9.12 교관자격증 및 낙하산정비사 관리규정

9.12.1 생명줄 강하 또는 교관도움 개방 강하 교관

- 9.12.1.1 D등급 강하 자격증 소지자.
- 9.12.1.2 교육생이 A 등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이론과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 9.12.1.3 시험관의 주관 하에 생명줄 강하 또는 교관도움 개방 강하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통과한 자

9.12.2 생명줄 강하 또는 교관도움강하 시험관

- 9.12.2.1 생명줄 강하 또는 교관도움강하 교관 자격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된 자로서 100명 이상의 교육 수료 경험을 가진 자.
- 9.12.2.2 9.11 및 9.12항의 시험관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써 협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9.12.3 2인승강하 교관

- 9.12.3.1 D등급 강하 자격자.
- 9.12.3.2 500회 이상 사각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 9.12.3.3 최근 12개월 동안에 20회 이상 사각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 9.12.3.4 총 자유강하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
- 9.12.3.5 실제 주낙하산을 분리하고 예비낙하산을 개방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강하주관자 주관 하에 특수 제작된 낙하산으로 주낙하산 분리 예비낙하산 개방 훈련을 받은 자.
- 9.12.3.6 2인승강하 시험관의 주관 하에 2인승강하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통과한 자.
- 9.12.3.7 2인승강하 시험관이 주관하는 실기 2인승강하를 10회 (교육생 위치에서 최소 1회 이상, 시험관이 교육생 위치에서 최소 4회 이상, B등급이상 자격자를 교육생 위치에서 최소 5회 이상)이상 실습한 자.

9.12.4 2인승강하 시험관

- 9.12.4.1 2인승 강하 교관 자격을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자.
- 9.12.4.2 100회 이상의 2인승강하 경험을 가진 자.
- 9.12.4.3 9.12 및 9.13항의 시험관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협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9.12.5 속성자유강하 교관

- 9.12.5.1 D등급 강하 자격자.
- 9.12.5.2 500회 이상 사각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 9.12.5.3 최근 12개월 동안에 20회 이상 사각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 9.12.5.4 속성자유강하 교육의 이론적으로나 실기 면에서 교육생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9.12.5.5 교육생이 A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도 및 감독할 능력이 있는 자.
- 9.12.5.6 속성자유강하 시험관 주관 하에 속성자유강하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 시험을 통과한 자.
- 9.12.5.7 속성자유강하 교관은 시험관의 추천에 의해 교관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9.12.6 속성자유강하 시험관

9.12.6.1 속성자유강하 교관 자격을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2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험을 가진 자.

9.12.6.2 9.12 및 9.13항의 시험관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써 협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9.12.6.3 속성자유강하 교관평가과정에 3회 이상 평가 관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

9.12.7 낙하산정비사

9.12.7.1 협회의 낙하산정비사 관리규정에 의한다.

9.13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 갱신의 요구조건

9.13.1 공통사항

9.13.1.1 협회의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서류 검토후 해당분과에서 심사를 받아 자격증을 갱신한다.

9.13.2 생명줄 강하 또는 교관 도움개방강하 교관자격 갱신

9.13.2.1 교관 자격갱신 요구조건에 충족하며, 교육생의 첫 강하 과정을 복습한 자

9.13.2.2 12개월 동안 1명 이상의 교육생을 첫 자유강하 때까지 훈련시키고 교관 역할을 한 자.

9.13.3 2인승 강하 교관자격 갱신

9.13.3.1 12개월 동안 5회 이상 2인승 강하를 실시한 자.

9.13.3.2 최근 6개월 동안 2인승 강하를 미실시한 교관은 교육생 강하를 하기 전에 최소 1회 이상의 강하 자격증 소지자를 교육생으로 하여 숙달강하를 해야 한다.

9.13.3.3 교관 세미나에 참가한 기록이 있는 자.

9.13.4 속성자유강하 자격갱신

9.13.4.1 12개월 동안 10회 이상 교육생 강하를 실시한 자.

9.13.4.2 교관 세미나에 참가한 기록이 있는 자.

9.13.5 낙하산정비사 자격갱신

9.13.5.1 협회의 낙하산정비사 관리규정에 따른다.

9.14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교관은 시험관의 감독하에 아래와 같은 평가를 받아야 자격이 갱신될 수 있다.

9.14.1 2인승 강하교관

9.14.1.1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시험관으로부터 지상훈련을 받은 후 시험관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한 교관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9.14.1.2 2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시험관으로부터 이론교육및 지상훈련을 받은 후 시험관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한 교관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9.14.2 속성자유강하 교관

9.14.2.1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시험관으로부터 지상훈련을 받은 후 시험관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한 교관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9.14.2.2 2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시험관으로부터 이론교육및 지상훈련을 받은 후 시험관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한 교관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9.14.3 낙하산정비사

9.14.3.1 협회의 낙하산정비사 관리규정에 의한다.

10. 낙하산 정비사 자격

예비낙하산 포장과 정비는 낙하산 정비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협회의 낙하산 정비사 관리 규정에 따른다.

11. 심판관 자격

협회의 심판관 관리규정에 따른다.

12. 사고 시 보고 및 보고서 작성

강하 시에 일어난 중대한 부상 또는 치명적인 사고 발생 시에는 강하장 운영책임자 또는 안전책임자는 사고발생 즉시 협회 훈련안전국에 우선적으로 구두 보고를 해야 하며, 7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13.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04월 21일부터 시행된다.